

10.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法律

(관련 주요내용 발췌)

法律 第4,666號,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41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 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주택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중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중여세의 면제) ① 제5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중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중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중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존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

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범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

- 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공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각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신항공전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5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 ②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범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용(목장용·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9조(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

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전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 ②제1항제1호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조(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법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장 간접국세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 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
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
는 어구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
- 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
해 주택의 건설용역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
할 목적으로 한국운수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
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
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
란한 도서로서 상공자원부장관(동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
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
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
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공급하는 음
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6. 농업경영 및 농작물의 대행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무연탄
 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
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
품에 한한다)
 3. 관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관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
세건설물품
 5.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
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
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
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43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20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제44조·제55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5조제2항 및 이 법 부칙 제16조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7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 용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 소용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 환전의 사업용토지등을 양도하는 경 우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 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 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토 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 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 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 용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 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 을 취득한 자가 사무용토지등을 양 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 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③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 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④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⑤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⑥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⑦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

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 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 감면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체감면제도를 신설함(법 제7조).

나. 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기술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구 분	세 액 공 제 율	
	종 전	개 정 안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액	지출액의 5퍼센트(중소기 업 10퍼센트)	〈삭 제〉
기술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	지출액의 30퍼센트(중소 기업 35퍼센트)	지출액의 50퍼센트

다. 각종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및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축 소하면서 지원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 (1)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율을 100분의 30(국산기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통일함(법 제10조제1항제2호 · 제25조 · 제26조 ·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
 - (2)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함(법 제4조 · 제8조 · 제16조 · 제17조 · 제19조 · 제23조 · 제28조 · 제29조 · 제41조 · 제42조 · 제48조 및 제95조).
 - (3)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금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으로 통일함(법 제6조 · 제34조 · 제50조 · 제51조제1항 · 제53조 및 제90조).
- 라. 첨단설비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법 제25조 내지 제27조 · 제45조 및 제88조).
- 마.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 · 감면을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 (1) 중소기업의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공장·법인본사 또는 목장의 이전등의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법 제31조·제32조·제33조·제43조·제44조·제70조 및 제71조).
- (2)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55조·제119조 및 제120조).
- (3) 공공사업용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 (4)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법 제66조).
- (5)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개인의 경우는 년도별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각사업연도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 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7, 과세소득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18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59조).
- 사.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자본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서 제조업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93조).
- 아.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광업·축산업·임업 및 의료업 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업종간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95조 내지 제98조).

〈법제처 제공〉